


감 사 보 고 서


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서학원(호서대학교)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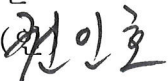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호서학원(호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호서학원(호서대학교)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
2023년 4월 11일

학교법인 호서학원
감사 김우영(인) 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2602호)

감사 김성일(인) 

피감사자(임회인)

학교법인 호서학원
사무국장 권인호(인) 

호서대학교
재무처장 이원근(인) 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 호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2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| 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 |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|
|--|-----------------|
| <p>- 일반업무회계: 지적사항 없음.</p> <p>- 수익사업회계: 지적사항 없음.</p> | |
| <p>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장 이순동 직인 (사인)</p> | |



